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70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정점식·박형수·김미애

정희용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고동진 · 강선영 · 김태호

장동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.

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第2項"을 "第3項"으로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第26條(敬老優待) ① (생 략)	第26條(敬老優待) ① (현행과 같		
	승)		
<u><신 설></u>	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		
	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		
	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5세		
	이상의 자에 대하여 「해운법」		
	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		
	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「유선		
	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		
	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		
	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	
<u>②</u>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	<u>4</u>		
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人에	第3項		
게 利用料金을 割引하여 주는			
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			
수 있다.			